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26조의 2 및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평의원회에서 추가 구성이 필요한 경우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1. 교원 - 5명
 2. 직원 - 5명
 3. 학생 - 1명
-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써, 교원은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 직원은 각 부서장이 추천한다.
-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로 하되,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다.
- ④ 정원을 증원 할 경우 평의원은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추어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⑤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정지) 평의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교수 및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직위해제
 3. 징계처분(감봉 이상)
 4.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 ② 학생 평의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 제6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1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소집)**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간사) 평의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관하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고, 의장을 포함한 3인이 간서명 한다.

제12조(자료제공) 의장은 평의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직원, 학생,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사항)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